

1. 개정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법률 제19524호, 2023. 7. 11. 공포, 2024. 1. 12. 시행) 제16조의2에서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·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·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“보훈단체”에 대한 정의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(안 제2조)하여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재향군인회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이 규칙에서의 “보훈단체”라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포함한다)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”를 “포함한다)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의2”로 한다.
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
제2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4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
정에 따른 사업 및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
제2조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포함한
다) 및”을 “포함한다),”로, “전단에”를 “전단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
법」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”로 한다.

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2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2(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포함한다)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의2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.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-----
			-----	-----.
1. “보훈 관련 단체”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.		1.	-----	-----.
			-----	-----.
가. ~ 마. (생략)		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		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	

2. “고유목적사업회계”란 보훈
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
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
다.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3. “수익사업회계”란 보훈 관련
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
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.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4. “회계감사보고서”란 보훈 관
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「5
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
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
2항 전단, 「고엽제후유의증
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」 제13조의9제2항
전단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
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

2. -----

--.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
법」 제4조의2제1호부터
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
사업 및 제6호에 따른 부
대사업

3. -----

-----.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
법」 제4조의2제6호에 따
른 수익사업

4. -----

2항 전단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9제2항 전단(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포함한다</u>),----- ----- ----- -- <u>전단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</u> -----.
---	---